창 녕 – 고 암 국 도 건 설 공 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 04.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1

제2장 대상지역의 설정 ····· 5

제3장 대안의 설정 ····· 9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13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19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4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 계획은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구간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민 교통편의 제공과 억만 및 하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대형차량이 창녕읍내를 통과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당초(왕복 4차로 : L=8.28㎞, B=20.0m, V=80㎞/hr) 2005년 06월 09일 환경영향평가(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완료 사업이나,

○당초 협의완료한 지역이 도로구역으로 미지정(도로구역 미고시) 되어 있으며,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년(`11~`15) 계획(국토교통부고시 제2012-84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3호)' 에 의거 2차로 시설개량으로 변경되어 금회 신규 도로노선을 선정하게 되었음

○본 계획노선은『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별표2]의 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u>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u>' 로부터 <u>5년이 경과</u>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도로의 건설	2)『도로법』제2조제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 또는 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계획노선	○계획노선 : 총 연장 8.36㎞	

<표 1-2>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2조(재협의) ①승인기관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표 1-3>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전
계획노선	○계획노선 : 총 연장 8.36㎞	

1.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해야 함

<표 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구성방법

구 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구성방법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기 능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구성주체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
구성방법	◦당해 행정계획 관계 전문가(환경단체 포함), 협의기관 공무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 주민대표·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1999. : 제1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01`~`05) 계획 → 4차로 신설
○ 2004. 04. 22 :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 노선협의
○ 2005. 06. 09 :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2. 12 :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11`~`15) 계획 → 2차로 시설개량
○ 2016. 18 :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16`~`20) 계획 → 2차로 시설개량
○ 2020. 05 ~ 09 :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1차)
○ 2021. 03.22~3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서면심의)
○ 2021. 04.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1. 05(예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1. 05(예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 2021. 08(예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1.4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 위 치 :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경남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 규 모 : 연장 8.36㎞, 폭원 11.5m(2차로), 설계속도 60㎞/hr(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 공용개시연도 / 목표연도 : 2028년 / 2048년
○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협 의 기 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계획의 범위
- 선 형 : 최소 곡선반경 R=300.0m, 최대 종단경사 S=4.5%(평지)
- 구조물 : 교량 8개소(760m), 교차로 : 7개소
- 사업비 : 818억원(공사시 635억원, 보상비 73억원, 부대비 등 11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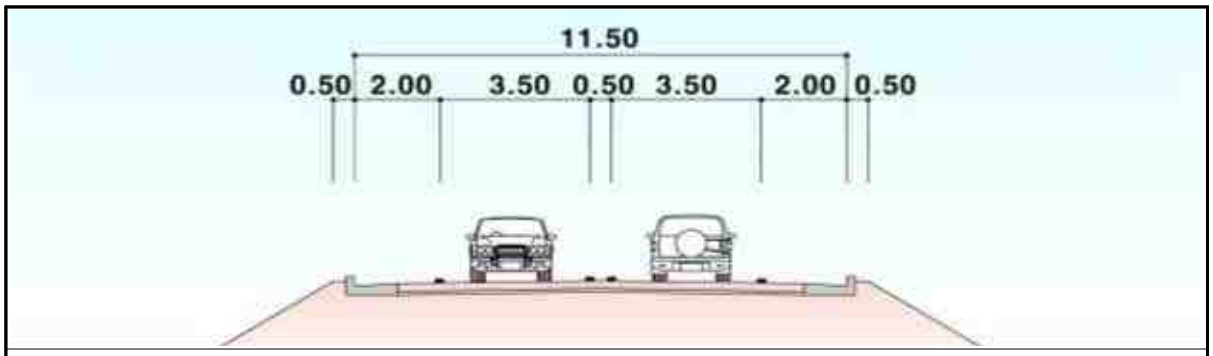

일반구간(B=11.5m)

(그림 2-1) 표준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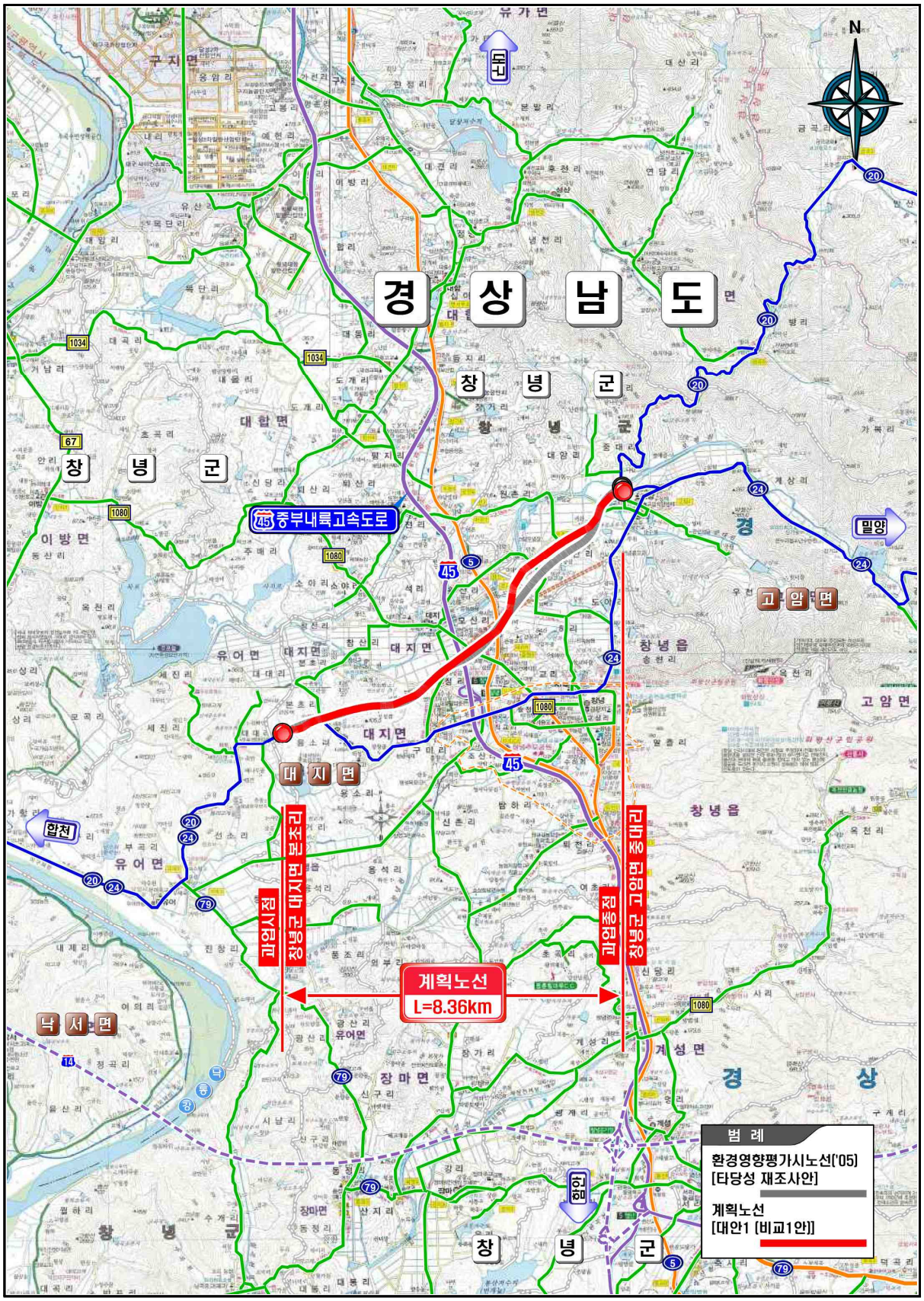

(그림 2-2) 계획노선 위치도

제2장 대상지역 설정

2.1 계획의 입지적 범위

○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고「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구성・운영가이드라인, 환경부, 2020.12.22.」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지 제2020-289호, 2020.12.122」,「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01., 환경부」에 따라 설정하였음

<표 2-1> 평가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의 설정기준	대상지역의 범위	비 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자연환경자산)	○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약 100~500m)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보전	지형·지질	○ 공사중 절·성토 및 구조물설치에 따른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질(수리·수문)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작업인부의 오수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기상현황 파악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대 기 질	○ 공사시 및 운영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발생의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약 500m)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교통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약 300m)	공사시 운영시
		토 양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및 인부에 의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공사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	○ 계획노선	운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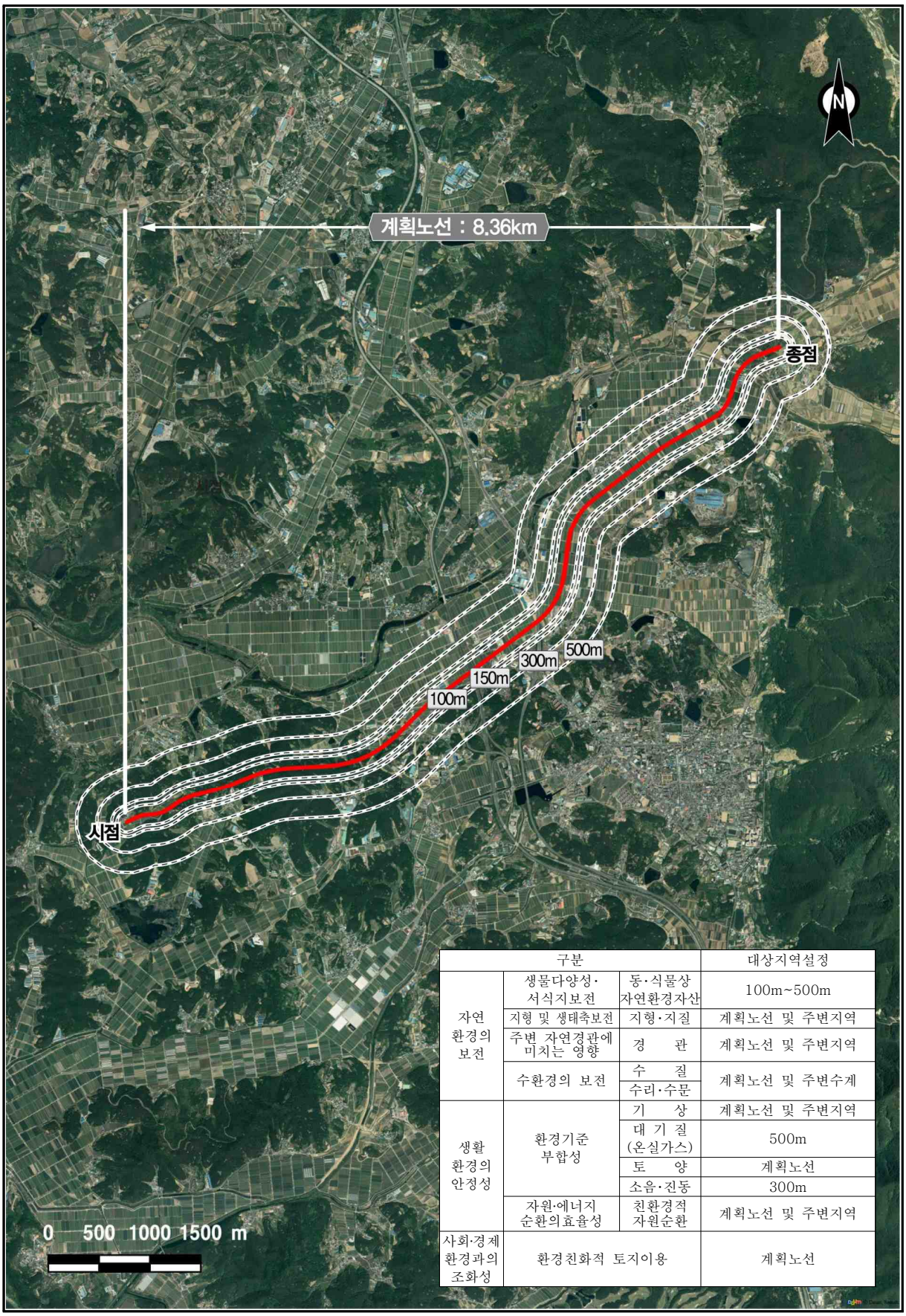

구분			대상지역설정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100m~500m
	지형 및 생태축보전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 질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수리·수문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대 기 질 (온실가스)	500m
		토 양	계획노선
		소음·진동	300m
	자원·에너지 순환의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그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본 사업노선 선정으로 인하여 자연・생태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환경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평가대상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구성・운영가이드라인, 환경부, 2020.12.22.」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지 제 2020-289호, 2020.12.122」,「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01., 환경부」에 따라 <표 2-2>와 같이 설정하였음

<표 2-2> 평가항목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분	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평가대상 지역범위	비 고
자 연 생 태 환 경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동·식물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약 100~500m)	○공사시 ○운영시
대 기 환 경	기상	○사업노선의 광역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주변지역 기상특성 파악 ○타 항목 기초자료 활용	○사업노선 ○주변지역	-
	대기질	○공사시 및 운영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발생의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약 500m)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교통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	○공사시 토사유출 및 작업인부의 오수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	○사업노선	○운영시
	토양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노선	○공사시
	지형·지질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예상지역 ○강우시 토사유출 예상지역 ○비옥토 유실 예상 지역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생 활 환 경 분 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 예상 지역	○사업노선	○공사시
	소음·진동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약 300m)	○공사시 ○운영시
	위락·경관	○사업노선으로 인해 경관변화 발생 예상 지역 -근・중・원경의 주요 조망점별 경관변화 검토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 회 경 제 환 경	인구·주거	○사업노선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 예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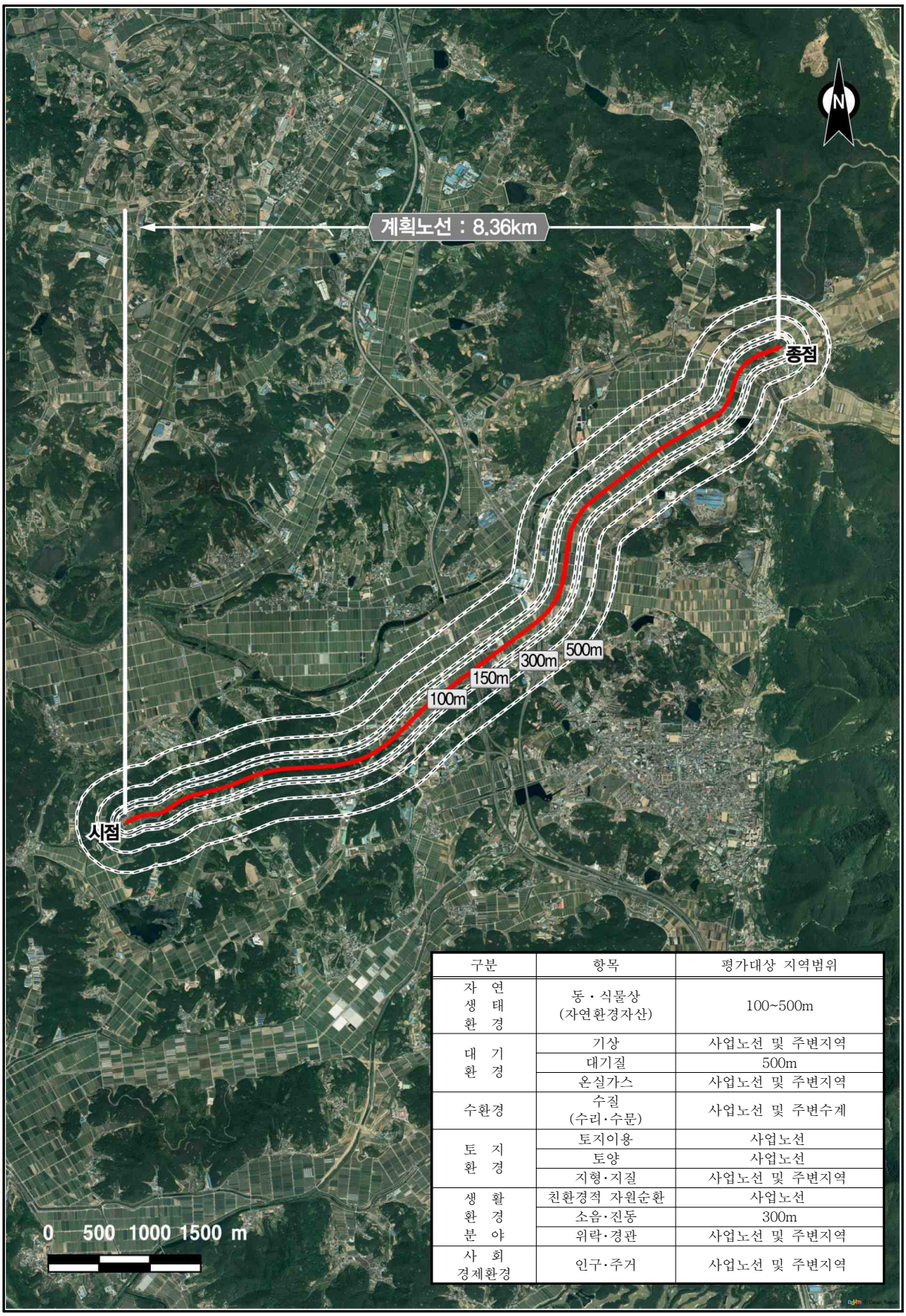

구분	항목	평가대상 지역범위
자 연 생 태 환 경	동 ·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100~500m
대 기 환 경	기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대기질	500m
	온실가스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사업노선
	토양	사업노선
	지형·지질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생 활 환 경 분 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노선
	소음·진동	300m
	위락·경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사 회 경제환경	인구·주거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그림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본 계획시행에 따른 대안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7.12, 환경부」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검토함

○본 계획의 대안은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입지" 및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선정하였음

- 「계획비교」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 대안1)와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 대안2)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입지」측면에서 3가지 비교 안을 설정하여 검토하였음
- 「시기·순서」측면에서 2가지 비교 안을 선정하여 검토하였음

<표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 안 종 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 획 비 교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action)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 단 · 방 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 요 · 공 급	○개발에 관한 수요 · 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 · 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 기 · 순 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표 3-2> 대안의 선정 결과

종류	선정기준	내 용	
계 획 비 교	계획수립 여부	대 안1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대 안2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입 지	대안별 노선검토	타당성 재조사안	○당초 4차로 노선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2차로 시설개량
		대 안1	○타당성 재조사안 대비 시점부 산지훼손 최소화
		대 안2	○농업진흥구역 중앙부 통과로 농지 저촉
시 기 · 순 서	계획의 시기 · 순서	대 안1	○금회 사업계획 수립시
		대 안2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3.2 대안의 설정

3.2.1. 계획비교

○ 계획 수립(Action) 및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대형차량의 창녕읍내를 통과함에 따른 교통위험도 개선이 가능한 대안2(Action)을 선정하였음

<표 3-3> 대안검토(계획 수립 및 미수립)

구 분	대안 1 (No Action)	대안 2 (Action)
개 요	○ 기존 도로를 이용하므로 환경현황 변경없음	○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 및 생활환경 여건 변화
장 점	○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형 및 생태계 변화 미약	○ 일반산업단지 이용차량 우회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 원활한 교통흐름 ○ 운전자의 교통편의 제공
단 점	○ 인근 일반산업단지 이용차량(대형차량) 창녕읍내 통행에 따른 안전 미확보	○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 지형 및 생태계 영향 예상
선 정		◎
○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일부 환경적인 악영향이 예상되나 대상지역의 현지여건을 고려한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또한, 창녕 억만 및 하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대형차량이 창녕읍내를 통과함에 따른 주민 불편 해고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2.2. 입지

○ 본 계획의 입지에 대한 대안은 타당성 재조사안, 비교1안, 비교2안 등 총 3개의 대안으로 비교·검토하였음

○ 대안 검토결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1안을 선정하였음

<표 3-4>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

구 분	타당성 재조사안	대안 1(비교1안)	대안 2(비교2안)
노선 개요	○ 시점부 별도 신설노선 계획 ○ 효정리 소림마을 근접통과 ○ 상업시설(창녕로컬푸드, 제이종합상사 등) 및 공공시설(농업기술센터 등) 저촉 ○ 국도5호선 접속(입체교차) ○ 억만리 어물리들 통과 ○ 창녕억만, 하리일반산단 인근 통과 ○ 농업진흥구역 외곽 통과	○ 시점부 기존도로 활용한 노선 계획 ○ 효정리 소림마을 근접통과 ○ 효정리 어물리들 이격 통과 및 농업기술센터 일부저촉 노선 계획 ○ 국도5호선 접속 (지방도 1082호선 활용한 평면 교차) ○ 억만리 어물리들 통과 ○ 군도19호선 활용한 노선계획 ○ 농업진흥구역 외곽 통과	○ 시점부 기존도로 활용한 노선 계획 ○ 효정리 소림마을 이격통과 ○ 효정리 어물리들 중간부 통과, 미락마을 이격 통과 노선계획 ○ 국도5호선 접속(평면교차) ○ 억만리 어물리들 통과 ○ 군도19호선 활용한 노선계획 ○ 농업진흥구역 중앙부 관통

<표 3-4>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계 속)

구 분		타당성 재조사안	대안 1(비교1안)	대안 2(비교2안)
연 장		L=8.32km	L=8.36km	L=8.35km
토공	깎 기	736천㎥	655천㎥	454천㎥
	쌓 기	549천㎥	438천㎥	440천㎥
	사토/순성토	사토:348천㎥	사토 : 210천㎥	사토 : 14천㎥
구조물	교 량	5개소 / 492m	8개소 / 760m	8개소 / 655m
추정 사업비	공사비	583억원	635억원	580억원
	보상비	76억원	73억원	74억원
	부대비	106억원	110억원	106억원
	총사업비	765억원	818억원	760억원
특징	기술적 측 면	ㅇ도로폭 B=10.0m ㅇ최소평면곡선 Rmin=700m ㅇ최대종단경사 Smax=3.9% ㅇ국도5호선상 기존 대지교차로(간이입체)와 근접하여 신설 창서교차로(간이입체)설치 ㅇ연화천(소)과 도야천(지방) 횡단 교량 미반영 ㅇ종점부 3지 평면교차로 가·감속차로 설치로 기존교량(중대교) 저촉	ㅇ도로폭 B=11.5m ㅇ최소평면곡선 Rmin=300m ㅇ최대종단경사 Smax=4.5% ㅇ신설 창서교차로 설치를 배제하고 기존 지방도 1082호선 접속하여 국도5호선 기존 대지교차로에 접속 ㅇ연화천(소)과 도야천(지방) 횡단 교량 반영 ㅇ종점부 소형회전 교차로(12천대 이하) 설치로 기존교량 미저촉	ㅇ도로폭 B=11.5m ㅇ최소평면곡선 Rmin=300m ㅇ최대종단경사 Smax=4.5% ㅇ신설 창서교차로 설치를 배제하고 기존 우시장사거리를 이용 하여 국도5호선 접속 ㅇ연화천(소)과 도야천(지방) 횡단 교량 반영 ㅇ종점부 소형회전 교차로(12천대 이하) 설치로 기존교량 미저촉
	사 회 환경적 측 면	ㅇ시점 산지부 최대 땅깎기고 45m로 산지훼손 과다 ㅇ요양원(덕인러브힐) 근접(16m) 통과 ㅇ소림마을 근접(65m) 통과 ㅇ창녕읍 북측구간 어물리들 남측 통과로 상업·공공시설 다수 저촉 ㅇ미락마을 앞 국도 신설에 따른 마을 고립(중부내륙고속, 국도5호선 인접) ㅇ상업 · 공공시설 저촉으로 민원 및 관원 협의 불리	ㅇ시점 산지부 최대 땅깎기고 30m 이하로 산지훼손 최소화 ㅇ요양원(덕인러브힐) 다소 이격(35m) 통과 ㅇ소림마을 근접(65m) 통과 ㅇ창녕읍 북측구간 어물리들 남측 통과로 상업·공공시설 일부 저촉 ㅇ타재 노선안 대비 미락마을 앞 국도 신설에 따른 마을 고립 완화 ㅇ타당성재조사안 대비 상업·공공시설 저촉 최소화로 민원, 관원 다소유리	ㅇ시점 산지부 최대 땅깎기고 30m 이하로 산지훼손 최소화 ㅇ요양원(덕인러브힐) 다소 이격(35m) 통과 ㅇ소림마을 이격(270m) 통과 ㅇ어물리들 중간부 통과로 상업·공공시설 저촉 최소화, 유통센터 일부 저촉 ㅇ시가지 이격 우회통과로 미락마을 고립 해소, 도시 확장성 유리 ㅇ농업진흥구역 중앙부 통과로 농지저촉 발생되어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난항
	경제적 측면	ㅇ사토 발생으로 토공사비 과다 ㅇ교량형식 일괄(S.T. BOX교) 적용으로 공사비 과다 ㅇ시가지 근접 통과로 연장 단축	ㅇ땅깎기량(발파암) 축소로 공사비 보통 ㅇ교량 가설조건을 감안한 최적 교량 형식 및 규모 반영 ㅇ종점부 기존군도18호선 활용으로 토지효율성 유리	ㅇ땅깎기량(발파암) 축소로 공사비 최소 ㅇ교량 가설조건을 감안한 최적 교량 형식 및 규모 반영 ㅇ종점부 기존군도18호선 활용으로 토지효율성 유리
선정안			◎	
		ㅇ타당성 재조사안은 효정리 어물리들 농경지 저촉을 최소화 하였으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 저촉 으로 민원 및 관원 발생이 예상되며 국도5호선 접속 교차로 설치시 교차로 근접 (대지교차로 500m이격: 엇갈림 발생 우려)에 따른 교통 안전성이 불리함 ㅇ우량농경지 편입 최소화 및 효정리 주요 지장물(상업·공공시설)을 이격하여 저촉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방도 1082호선에 접속하여 기존 국도5호선 대지교차로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민원·관 사전해소와 교통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대안1을 선정함		

3.2.3 시기 · 순서

○ 계획 시행시기를 1안(금회 계획수립시)과 2안(향후 계획수립시)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대안 1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하였음

<표 3-5> 시기 · 순서에 따른 대안 비교 검토결과

구 분	대안 1안	대안 2안
시 기	○ 금회 사업계획 수립시	○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장 점	○ 선형불량구간인 기존도로 개량 및 시가지우회하는 노선계획으로 도로 안전성 확보및 주민불편 해소 가능 ○ 다소 우회하는 기존도로의 노선을 직선화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주변 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 향후 계획 수립시까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음
단 점	○ 사업 시행으로 지형의 변화, 소음 및 진동, 자연환경 일부 훼손 등의 환경 영향 발생	○ 도로안전성 평가 종합위험도 : 72.5% 위험구간으로 시설개량 미실시에 따른 선형불량구간의 지속적 사고 발생 유발 ○ 기존국도 20호선이 창녕읍 시가지를 통과함에 교통사고 위험성 다수 ○ 노선 주변 산업단지(억만, 하리) 조성으로 대형차량이 창녕읍내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불편 및 교통위험 내포
선정안	◎	
	○ 사업계획 수립의 시기 및 순서 측면에서 금회 계획수립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등에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노선 위험구간 개량 및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 신설로 주민민원 해소, 교통안전성 확보, 국도의 간선기능 조기확보가 가능한 대안1을 선정함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1 전략환경영향평가

4.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환경영향요소의 발생은 계획노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접영향권까지 포함하여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환경항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향요소를 추출하였으며, 평가항목과 영향요소와의 상호작용평가는 다음과 같이 해당란에 영향 및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로 이용해 정량적으로 나타내었음

<표 4-1>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평가항목 \ 환경영향요인			건설기계 및 자재운반	지형변형	구조물공사	인부 및 장비투입	비점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도로운영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	◆	–	–	▲	▲	–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	–	–	–	–	–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	–	–	–	–	–
	수환경의 보전		◆	◆	–	–	▲	–	–	–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	–	–	–	–	–	–
		대기질	◆	◆	–	–	–	▲	–	–
		온실가스	▲	–	▲	▲	–	▲	–	–
		소음진동	◆	◆	–	–	–	–	▲	–
		토양	–	▲	–	–	–	–	–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	▲	–	–	–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	▲	–	–	–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	▲	–	–	–	–		○
범례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효과는 미약하다					▲ : 악영향이 있으나 미약하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 악영향이 크다				

4.1.2 평가항목의 선정

○ 계획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3개 항목을 일반평가항목,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거나 미약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표 4-2> 중점평가 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고
1.계획의 적정성	가)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
	나)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수립, 도로시설개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2.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의 서식지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시행시 지형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교량 등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경관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부유토사, 운영시 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수질 및 수리수문
	나)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건설장비 가동 및 절·성토 공사 및 운영시 차량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방안 검토	대기질
			○건설장비 가동, 차량운행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소음·진동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검토	친환경적 자원순환
	다)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도로시설물 설치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공간환경관리계획	토지이용

<표 4-3> 일반평가 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고
2.입지의 타당성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계획노선 인근 기상현황 조사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기상
			○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 및 운영시 차량 이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토 양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현황 및 영향여부 검토	타 항목 중복

<표 4-4> 제외 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사유
제외 항목 (9개)	악 취	○ 악취발생 요인 없음
	해 양 환 경	○ 계획의 특성상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약
	위 락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약
	위생 · 공중보건	○ 위생 · 공중보건상 문제는 미약
	전 파 장 해	○ 전파장해 요인 없음
	일 조 장 해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약
	인 구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약
	주 거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약
	산 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약

4.2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4.2.1 조사 · 예측의 방법

○본 계획의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4-5>과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계획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계획임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4-5>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 연 환경의 보 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①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 동물상 현황, 담수생물상 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계획노선 주변 약 100~500m)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에 대한 영향검토 ○분류군별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검토 ○토사유출에 따른 담수생물상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지형분석, 특이지형 및 지질노두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검토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훼손 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을 선정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수환경의 보전	①조사내용 : 하천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농도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인근하천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표 4-5>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계속)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인근 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정리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인근지역 ③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조사	○기상연보 분석·정리
		대기질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원 및 대기오염도 현황,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그 주변지역 (계획노선 주변 약 500m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이 예상되는 오염 물질에 대한 발생량 산정, 영향예측 시행
		온실가스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그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토양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원, 토양오염도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그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공사시 발생되는 토양오염물질 예측
		소음진동	①조사내용 : 주변 소음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계획노선 주변 약 300m)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	○공사시 공사장비 및 운영시 차량이동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예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①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그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계획의 시행시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조사내용 : 폐기물, 분뇨 등 발생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그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종별 폐기물 발생량 예측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①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그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검토

4.2.2 환경현황 조사계획

가. 환경질 측정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계획을 수립하였음

- 측정지점
  - ·대기질 및 소음진동 : 주변 영향권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인근 주거지역 중심으로 선정
  - ·지표수질 : 계획노선 인근 수계 ·지하수질 : 계획노선 인근 마을
  - ·토양 : 계획노선 내
- 측정횟수 : 1회 조사
  - ·1회 : 2021년 04월, 봄(조사예정)

※조사시기는 사업의 추진일정 및 현지기상 현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표 4-6> 환경질 조사계획

구 분	측정횟수	조 사 항 목	비고
대기질	1회	◦PM-10, PM-2.5, NO_2, SO_2, CO, O_3, Pb, C_6H_6	2021년 04월(봄)
지표수질	1회	◦pH, BOD, COD, DO, SS,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대장균군수,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TOC	
지하수질	1회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분원성대장균군, Pb, F, As, Hg, Cn, Cr^{6+}, NH_4-N, NO_3-N, Cd, 페놀, 유기인, TCE, PCE, BTEX, 총경도, $KMnO_4$소비량, Cu, 색도, pH, Zn,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SO_4^{2-} 등 32개 항목	
토양	1회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 BTEX, TPH, TCE, PCE	
소음·진동	1회	◦소음 및 진동도 (주·야간) (소음 - 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 - 주간2회, 야간 1회)	

나. 동·식물상 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 조사횟수 : 1회
  - ·1회 : 2021년 04월, 봄(조사예정)

※조사시기는 사업의 추진일정 및 현지기상 현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조사내용 : 식물상,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등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5.1 주민의견 수렴계획

5.1.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및 의견수렴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본 계획의 주관 행정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 실시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주관 행정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공람장소는 계획노선이 위치한 창녕군 대지면사무소, 고암면사무소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요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임

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계획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하고, 설명회 장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관계기관(창녕군)과 협의하여 결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개최요구가 있고, 개최요구에 대한 법적요건이 충분할 경우에 개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시 방역 조치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겠음

-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설명회(영상 설명, 기타 정보통신망 등)를 병행하여 개최하겠으며 필요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 설명회에 따른 지역주민의 군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설명회 개최 기간 및 시간을 분산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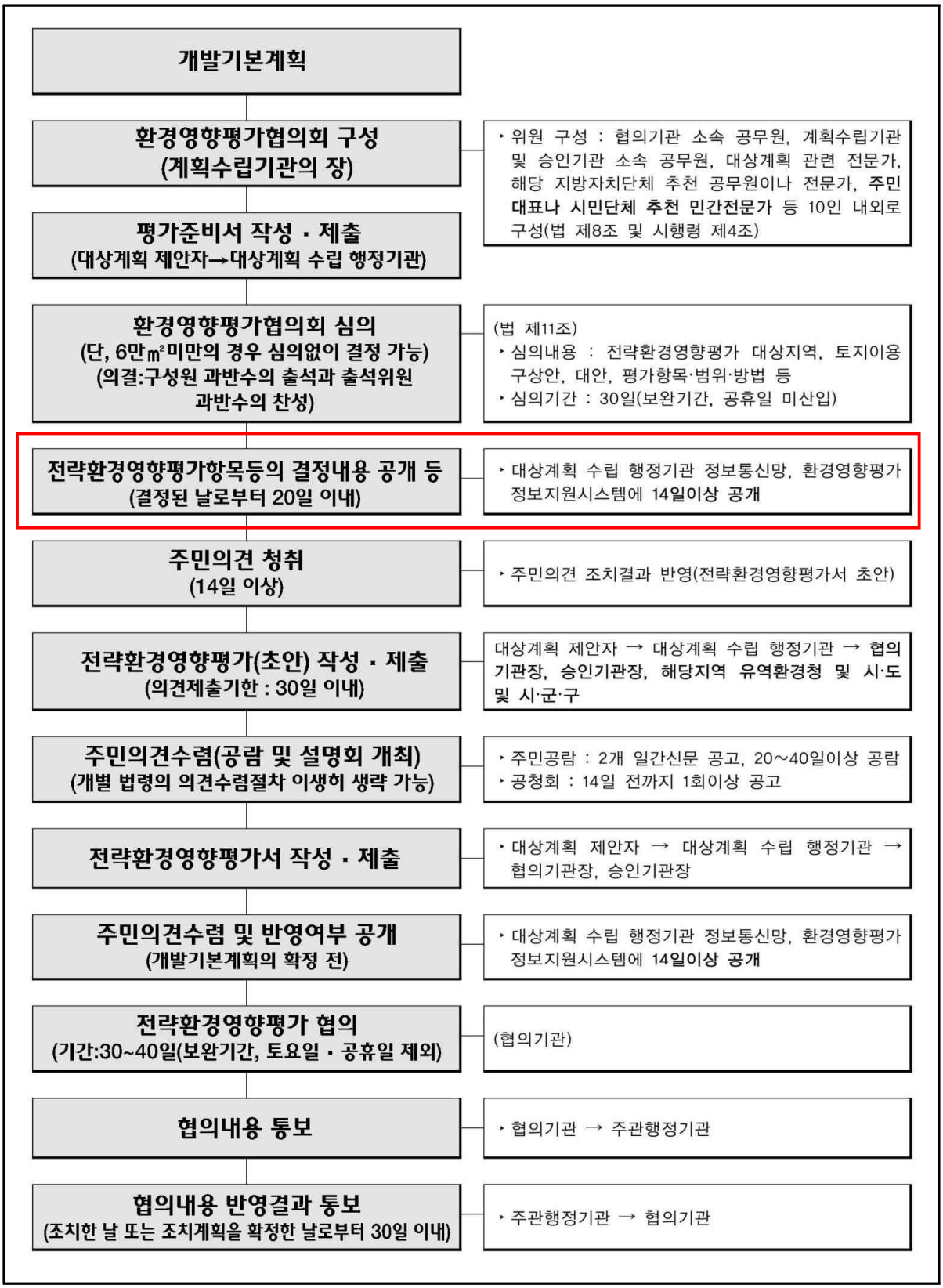

(그림5-1)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5.1.2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 5항 및 제24조(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 6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시 환경영향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심의를 거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시 결정내용 공개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표 6-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법적 실시근거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7.11.28.>

나.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계획

1) 초안 공고 및 공람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는 해당 사업노선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공람 함

○ 공고시점 : 초안보고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공고방법 : 전국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내용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공람기간 : 20일~60일 범위에서 공람(공휴일 제외)

○ 초안서 및 주민의견서 비치장소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 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 각각 1개소 이상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공람장소는 추후 협의후 결정)

2)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시점 :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내(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공고 : 초안 공고(일간 및 지역신문)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개최장소 : 설명회 개최 장소는 해당 사업노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후 결정

3) 공청회 개최 (필요시)

○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개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였음

○심 의 명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관련)

○심의기간 : 2021.03.22 ~ 2021.03.31.

○심의방법 : 서면심의

○위　　원 : 위원장 포함 총 10인

<표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장	이○○	위원장
2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박○○	협의기관 선정위원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시 설 주 사	김○○	승인기관 소속공무원
4	경동엔지니어링	상 무	노○○	승인기관추천 민간전문가
5	KEI 환경평가본부	연 구 위 원	선○○	협의기관추천 민간전문가
6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지방환경주사	박○○	관할자치단체 소속공무원
7	창녕군 대지면 모산리	이 장	성○○	주민대표
8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이 장	김○○	주민대표
9	창녕군 창녕읍 창서리	이 장	허○○	주민대표
10	창녕환경운동연합	사 무 국 장	김○○	시민단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힘내라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알림 및 서면심의 요청(창녕-고암)

1. 도로계획과-1577호(2021.3.2.)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조에 따라 전략영향평가협의회를 붙임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효율적 심의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심의안건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21.3.31.(수)까지** 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과업진행을 위해 기한 엄수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해당 면·읍장님께서는 주민대표에게 관련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배포되는 협의자료는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검토안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1부(별송).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양식 1부.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 이[redacted],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설주사 김[redacted],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창녕군수(환경위생과장), 대지면장, 고암면장, 창녕읍장,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노[redacted] 귀하, KEI 환경평가본부 연구위원 선[redacted], 창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redacted]

주무관 유[redacted] 사무관대우 김[redacted] 도로계획과장 전결 2021.3.22. 이[redacted]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173 (2021. 3. 22.) 접수

우 4881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http://www.molit.go.kr/brocm

전화번호 051-660-1[redacted] 팩스번호 051-660-1[redacted] /[redacted]@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1 - 1

(그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요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총 괄 의 견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제시하고 동 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점 검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계획노선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등 환경상 악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선정한 것으로 적절함
-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동식물상) : 약 100~500m
- 환경기준 부합성(대기질, 소음진동 등) : 약 300m
- 수환경의 보전 : 계획노선 수용수계
2. 토지이용 구상안
○교량, 성토구간 계획으로 생태계 단절, 지역주민 이동의 단절 등이 우려되는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3. 대안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및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별 영향예측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고, 대안별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계획노선 주변에 우포늪이 수용 수계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생태계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계획노선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 설명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계획노선으로 인해 환경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
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의견없음

2021. 03.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이[redacted]

1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 사 업 개 요 >

○ 위 치 :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 경남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 사업규모 : 연장 8.36km, B=11.5m(왕복 2차로)
- 구조물 : 교량(760m/8개소)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7항 [별표2] 제2호 마목 도로의 건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
○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16~'20년)'에 따라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국도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동·식물상과 자연경관 등에 훼손이 우려되므로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사업구역 경계설정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해당 노선의 현황사진(위성사진, 드론사진 등),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제시

- 1 -

2	박○○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은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구상안

○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수요 및 지표의 타당성, 도로계획의 대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도로 노선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 중에 백두대간 정맥(지맥) 등 생태축 및 야생동물이동로,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습지 및 각종 보호지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할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노선변경, 교량화, 터널, 생태통로 등)
- 보존 가치가 있는 특이한 지형 형상 훼손여부와 훼손 시 보전대책 제시
- 계획노선의 환경 민감지역 통과여부, 교통량 증가에 따른 CO_2 배출 및 오염물질 증가 등 대기환경 악화여부 검토·제시
- 기존 주거지의 단절 및 주거지역 등 정온시설의 경우 환경기준 유지가능성 여부 및 대책(이주, 노선변경 등 대안검토) 등을 제시

3. 대안

○ 대안은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만이 아닌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이·치수 및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항목별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저감방안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

- 2 -

2	박○○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공 통

○ 현황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설정, 예측 모델 입력 및 검증, 사후조사와 비교·검증 등의 목적을 가지는 바, 영향예측 및 사후조사와 연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시기 및 지점, 항목 및 횟수 등은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함.
○ 기존 지침·통계·조사자료 등 문헌 조사 시 5년 이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조사지점(도면)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 해당지역에 대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 등

나. 항목별 심의의견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조사 시 계절 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고 조사결과를 지형도에 표기
- 동・식물상 조사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의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및 발견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태자연도 및 식생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영향 저감방안 제시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 자연경관 심의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지구에 의한 경관 변화가 현저한 곳을 고려한 예비조망점(현황사진 위치를 포함)을 근경과 원경을 구분하여 선정하고, 수치 지형자료를 활용한 가시권 분석을 실시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후 경관 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 경관영향 예측을 위한 경관시뮬레이션 이미지는 Z좌표의 명시 및 지반고를 표시하여 제시
○ 지형·지질

- 3 -

2	박○○

(그림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 사업지역의 표고 및 경사도를 분석하여 지형 훼손이 최소화되는 계획으로 노선 선정

○ **수 질**

- 하류지역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등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시행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 사업시행 시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하천 등 하류수계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환경기준 부합성**

- 공사 및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 마련

○ 사회 ·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온실가스 검토대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 여부 검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유관기관 활용 등)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시 방역 조치 등 다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함

* (참고) 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20.2」 및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

- 군집행사 기피로 대면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미진하다고 계획수립기관이나 승인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설명회(영상 설명, SNS, 기타 정보통신망 등)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기관장에게 통보
- 설명회에 따른 지역주민의 군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기간 및

- 4 -

2 박○○

시간을 분산하여 대면 설명회를 실시

※ 분산된 기간(날짜 분산) 또는 시간(예, 10시~12시, 13시~15시, 15시~17시)과 충분한 개별 공간(독립공간 또는 충분히 이격된 회상 배치 등)에서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이 상주하여 방문자에게 설명

- 설명회 개최 기간 또는 시간을 분산하여 시행하는 경우 및 비대면 설명회를 병행 개최하는 경우 개최 방법과 참여방법, 의견 제출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 고지

6. 기 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계획의 다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정비계획(신설 및 확·포장) 노선의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계획노선과 주요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과의 연관성 여부 등 검토자료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021. 3.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박 [redacted]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5 -

2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총 괄 의 견

○계획노선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영향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획노선의 주변으로 주거지, 농경지, 임야 등이 분포함에 따라 지역 주민 생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바,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구간을 조사·분석후 저감대책 및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대상지역 설정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0-289호)」를 참고하여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동식물상), 환경기준 부합성(대기질, 소음진동), 수환경의 보전(수질 및 수리수문) 등의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절·성토 발생이 과다한 구간은 지형변화 및 경관요소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계획비교, 입지,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입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평가항목 및 범위의 설정(조사·예측의 방법)은 기존 지침·통계·조사자료 등 문헌 조사시 5년 이내 최근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설명회는 관련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이해 당사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고 및 설명회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의견없음

2021. 03.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김 [redacted]

3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총 괄 의 견

○ 창녕-고암 간 국도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환경적 영향 및 부하저감을 위한 정성적인 예측을 통해 실시계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반적으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각 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계획노선 서측방향으로 약 2km 이격한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에 대한 영향여부 판단을 실시하여 필요시 조사범위를 확대 설정 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에 따른 생태·경관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거지역 통과구간 발생에 따른 생활환경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여야 함

3. 대안

○ 노선계획 수립 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지맥 및 생태축, 주요 수계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평가대상 지역 범위설정을 **100~500m**로 표시하였으나, 조사시 법정보호종 발견 및 영향여부 판단에 따라 구역별 자연생태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평가대상지역 설정, 영향조사 범위를 조정·시행하기 바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비대면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하기 바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관리참고

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평가항목의 선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하였는 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선정한 평가항목을 토대로 구체적인 작성 목차를 계획하기 바람

2021. 03. 2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노 [redacted]

4 노○○

(그림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계 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본 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와 고암면 중대리를 연결하는 창녕-고암 국도(연장 8.36km)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다수의 노선대안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적 영향(생태계 현장조사 등에 근거한 평가, 지형훼손의 정도, 경관적 영향 등)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대기질, 소음,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친환경적 최적 노선 선정 과정 및 결과의 구체적인 명시 필요
○ 계획노선 내 교량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대안 검토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계획노선 주변의 타 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소음진동 누적평가를 통한 적정성 검토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하천구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검토
○ 계획노선 통과구간을 대상으로 생태계 등의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최소화 및 민감지역 보존을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 검토

2021. 4. 5.

심의위원 선[redacted]

5 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총 괄 의 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여 환경적으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검토하고, 공사구간의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고려한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마을 통과구간은 완충구간을 조성하여 자동차의 분진 및 미세먼지 저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 준공후 도로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1차 차단 할수 있는 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3. 대안
○주민의견·환경훼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설정하여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계획노선 주변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생태자연도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함

2021. 3. 3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박[redacted]

6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총 괄 의 견

○금회 추진 예정인 사업의 특성과 노선을 고려하여 영향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획의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자료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금회 추진 예정인 사업의 특성과 노선을 고려하여 영향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신설노선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기존노선의 확·포장 불가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대안
○노선계획 수립 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생태·녹지축, 자연경관 등의 훼손과 생태적 연결성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일반적인 현황·저감방안 등은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r 설명회 등에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2021. 3.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성[redacted]

7 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총 괄 의 견

○ 공사 구간의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 시행시, 사업 완료후 분진, 미세먼지, 소음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3. 대안
○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계획노선 주변 생태계 분포를 파악하여 법정 보호종의 보호가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 지역주민들이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함.

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2021. 3.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김[redacted]

8 김○○

(그림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계 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총 괄 의 견 ○ 현지 및 문헌 조사를 철저히 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에 따른 농촌지역의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임. 2. 토지이용 구상안 ○ 마을 통과 구간에 대하여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분진 및 미세먼지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함. 3. 대안 ○ 주민의견 및 환경훼손 예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안 설정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에 대한 항목 ○ 법정보호종 및 생태계 분포도 등의 항목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 및 농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 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본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몽리민들은 노선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바 없음에 이 부분에 대하여 사전설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노선 선정 등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바람. 2021. 3. 2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허 [redacted]	9	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총 괄 의 견 ○ 국도 20호선의 시내 통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의 신설이 마땅한 바, 대상지역 내의 지목이 산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최소한의 생물 서식환경 및 산림훼손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현 군도 등의 도로를 확장, 활용하여 '비교 2안' 의 공사 추진을 추천드림.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산지 부분은 동물들의 원활한 이동통로 개설이 필요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노선의 2~3km 이내에 생태보전지역(우포늪-천연기념물 524호)이 북측 효정교 부근에 접하고 있음. 3. 대안 ○ 대안 1, 2를 비교하면 2안이 타당하다고 봄. 이유는 군도 19호선의 활용과 인근 마을 및 시가지, 관공서 등의 이격거리가 많으므로 소음, 진동 등의 환경 관련 민원 발생요인이 적음.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적정하다고 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 없음. 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평가준비서의 내용 등은 창녕군 전체를 나타내고 있으나 평가대상 인근의 지질, 동·식물적 환경 등의 조사가 미비한 점이 아쉬움. 또한 평가준비서 전반 내용을 볼 때 타 지역 사례를 옮겨 대입한 듯한 부분이 있어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봄. 2021년 04월 07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김 [redacted]	10	김○○

(그림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계 속)